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련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600

발 의 년 월 일 :2021년 08월 11일

발 의 자 :김혜련, 권수정, 김경우, 김기대, 김기덕, 김정환,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노승재,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성흠제, 송아량, 양민규, 유정희, 이영실, 이정인, 장상기,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황규복 의원(26명)

1. 제안이유

○ 청소년 관련 조례는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기 위해 ‘국적’을 추가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조항에 ‘국적’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을 “국적ㆍ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생 략) ②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③ ~ ⑤ (생 략)	제4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적·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 ③ ~ ⑤ (현행과 같음)